

농업법인 개요와 운영현황



이 봉 훈

농림부 시설관리과장
(T.02-500-1986)

1. 농업법인개요

구 분	영농조합법인 (Farming association corporation)	농업회사법인 (Agricultural corporation company)
성 격	• 협업적 농업경영	• 기업적 농업경영
법적근거	•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	•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
설립자격	• 농업인, 농산물의 생산자단체	• 농업인, 농산물의 생산자단체
발기인수	• 농업인 5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자회사 : 유·무한 각 1인 이상 • 합명회사 : 2인 이상(무한) • 유한회사 : 2인 이상 50인 이내 • 주식회사 : 3인 이상(주주)
준조합원	<p>〈준조합원 : 법 시행령 제10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조합법인에 생산자재를 공급하거나 생산기술을 제공하는 자 •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임대하거나 농지의 경영을 위탁하는 자 • 영농조합법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대량으로 구입·유통·가공 또는 수출하는 자 • 그 밖에 농업인이 아닌 자로서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하는 자 <p>※준조합원 :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한도 없음)하고, 의결권이 없음</p>	<p>※ 비농업인도 의결권 인정</p>

구 분	영농조합법인 (Farming association corporation)	농업회사법인 (Agricultural corporation company)
사 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 농업관련 공동이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 • 농산물의 공동출하·가공 및 수출 • 농작업의 대행 • 기타 영농조합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법 시행령 제1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경영,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농작업 대행 •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 종자 생산 및 종균배양 사업 • 농산물의 구매·비축사업 • 농기계 기타장비의 임대·수리·보관 • 소규모관개시설의 수탁·관리 (법 시행령 제21조)
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 현금, 현물 • 조합원 1인 출자한도 : 제한없음 • 준조합원 출자한도 : 제한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 현금, 현물 • 비농업인 출자한도 : 총출자액의 3/4 (법시행령 제20조)
의 결 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 1표제(합의제) ※ 기본 성격이 민법상 조합이기 때문에 조합원은 출자액에 따라 의결권의 수에 차이가 없는 모두 1인 1표씩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자지분에 의함
농지소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유 가능 ※ 농업인이 출자한 출자액의 합계가 그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의 1/2를 초과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유 가능(출자 1/2초과, 농업인이 대표자, 업무집행권을 갖는 자 1/2 이상이 농업인) ※ 농지법 제 2조 제3호
타법준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법중 조합에 관한 규정 준용(법 제15조 제8항) • 상법 제176조 준용(법인의 해산명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법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 (법 제16조 제5항)
설립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인이 자율적 설립·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생산자단체의 가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협협동조합, 산림조합 및 업연초생산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구성원의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자회사 : 유한·무한책임사원 • 합명회사 : 무한책임사원 • 유한회사 : 유한책임사원 • 주식회사 : 주주

2 농업법인 운영현황

▶ 운영현황(2003. 12월말 현재)

(단위 : 개, 소)

구 분	합 계	운 영 중	사업준비중	휴업 등
2002(A)	10,139	5,598	725	3,816
2003(B)	10,023	5,432	742	3,849
(%)	(100)	(54.2)	(7.4)	(38.4)
(B/A, %)	2.2	△1.0	2.3	0.9
영농조합법인	8,024	4,274	703	3,047
(%)	(100)	(53.3)	(8.7)	(38.0)
농업회사법인	1,999	1,158	39	802
(%)	(100)	(57.9)	(2.0)	(40.1)

※ 농업법인 10,023개 중 운영 중인 법인은 5,432개(54.2%)

- 영농조합법인 53.3%, 농업회사법인 57.9%

▶ 법인운영주체(2003. 12월말 현재)

(단위 : 개, 소)

구 분	운영중인 사업체수	운영주체	
		출자자 공동운영	출자자 개별운영
합 계	5,432	3,442	1,990
(%)	(100)	(61.1)	(38.9)
영농조합법인	4,274	2,746	1,528
(%)	(100)	(64.2)	(35.8)
농업회사법인	1,158	696	462
(%)	(100)	(60.1)	(39.9)

※ 운영중인 농업법인 5,432개 중 출자자 공동운영은 3,442개(61.1%)

3. 세제지원 현황

구 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국 세	<p>〈법인세〉</p> <p>①농업소득 면제 : 2006.12.31까지</p> <p>②농업외소득 : 출자조합원당 연간 1,200만원까지 면제 : 2006.12.31까지</p> <p>※조특법 제66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63조제1항</p> <p>〈부가가치세〉</p> <p>①비료, 농약 및 농업·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영세율 적용 : 2005.12.31까지 공급분 (친환경농자재 포함)</p> <p>※조특법 제105조제1항제5호</p> <p>②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2006.12.31까지</p> <p>※조특법 106조제1항제3호, 동법시행령 제106조제3항</p> <p>③농업용 석유류 구입시 부가가치세 감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 제 : '07.6.30까지 공급분 • 75%감면 : '07.7.1~' 07.12.31까지 공급분 <p>※조특법 제106조의2제1항</p>	<p>〈법인세〉</p> <p>①(좌동)</p> <p>②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다음 3년간 50% 감면 : '06.12.31까지 다만, '03.12.31 이전 설립 법인은 5년간 50%감면</p> <p>〈부가가치세〉</p> <p>①(좌동)</p> <p>②(좌동)</p> <p>③(좌동)</p>
지방세	<p>〈취득세〉</p> <p>①창업후 영농에 사용하기위해 2년 이내 취득한 부동산 : 면제(등록세 면제)</p> <p>※지방세법 제266조제7항</p> <p>〈등록세〉</p> <p>①법인설립 등기시 : 면제</p> <p>※지방세법 제266조제7항</p> <p>②농업법인이영농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록세 50% 경감</p> <p>〈재산세, 종합토지세〉</p> <p>①과세기준일현재 고유업무 직접사용 부동산 : 50%감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기준일 : 재산세는 매년 5.1일 종합토지세는 매년 6.1일 <p>※ 지방세법 제266조제7항</p>	<p>〈취득세〉</p> <p>①(좌동)</p> <p>〈등록세〉</p> <p>①(좌동)</p> <p>②(좌동)</p> <p>〈재산세, 종합토지세〉</p> <p>①(좌동)</p>

구 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 합 원 (사원)에 대한 감면	<p><양도소득세> ①농지출자시 양도소득세 면제 : 2006.12.31까지 출자분 ※조특법 제66조제4항</p> <p><배당소득세> ①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전액 면제 : 2006.12.31까지 ②농업소득외 배당소득은 조합원당 연간 1,200만원까지 면제 : 2006.12.31까지 ※조특법 제66조제2항</p>	<p><양도소득세> ①현물출자분 면제('06.12.31) ※조특법 제68조제2항</p> <p><배당소득세> ①해당없음 ②해당없음</p>

4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사후 관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공통지원요건 <개정 2004. 11. >

가.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나. <삭제 2004. 11. >

다. <삭제 2004. 11. >

라. 출자금을 포함한 자기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된 법인

마.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 <개정 2004. 11. >

바.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음

사.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다만, 창업농후계자가 대표자인 법인과 축산분뇨공동처리 시설은법인설립 후) <개정 2004. 11. >

아. 농업법인 경영체를 농림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구성원이 부적격자가 있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사업을 위하여 위장 설립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확인 후 선정할 것 <신설 2002. 11. 29>

2. 사업별 지원요건 <개정 2002. 11. 29>

- 공통요건 이외의 사항으로서 농림사업시행지침서의 개별단위 사업별로 명시되어 있는 기준

3. 사후관리기준

가. <삭제 2002. 11. 29>

나. 법인경영체에 지원되는 시설물의 준공검사는 시·군의 기술직 (건축, 토목직)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함

다. 지원된 시설물이 완공된 경우에는 당해 법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정산할 것

라. 1회 3일 이상의 교육(복식부기,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정보 활용방법, 기타 지원되는 품목의 영농기술 교육 등)을 받은 법인은 다른 법인보다 우선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
단, 모든 요건을 갖추고 다른 법인과 동일 조건일 경우에 한함

마. 한 사람이 2곳 이상의 농업법인에 조합원 또는 사원으로 참여할 경우 당해법인은 사업지원대상에서 제외

바.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경영에대한 지도관리는 품목담당과에서 담당자 및 책임자를 지정 운영하되 일반적인 운영상의 지도, 감독(예 : 설립, 출자 등)은 총괄 담당과에서 담당

사.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

아. 부도 등으로 인한잉여시설물의 제3자 이양 원활화 추진

- 농업법인이 부도 등으로 파산할 경우 시설물의 잉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구
 - 정부지원보조금의 제3자 인계는 농림사업 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자인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승인할 것
 - 정부지원 시설물이 농업목적대로 사용되고 내용연수와 같은 기간동안 관리되도록 시·군의 품목담당과에서 적극 관여할 것

자. 사업규모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재무제표 징구

차. 사업규모가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및 영농기술 능력진단평가와 신용평가를 실시